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 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회부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20. 10. 12.
- 회부일 : 2020. 10. 13. (의안번호 : 20-136)

2. 제출이유

「평생교육법」과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정정하고 평생교육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내용 간결화(안 제1조)
- 나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다. 평생교육협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개정(안 제5조 및 제8조)
- 라. 회의 소집할 수 있는 경우 중 중복 내용 삭제(안 제6조)
- 마.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지정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바.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(안 제3조, 제4조, 제10조,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평생교육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8. 27.~ 9. 16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부패영향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심사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평생교육법</u> 」(이하 “ <u>법</u> 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<u>마포구민</u> (이하 “ <u>구민</u> ”이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<u>평생학습도시</u>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<u>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</u>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평생교육법</u>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 <u>평생교육</u> ”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<u>학력보완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 1. ----- -----

교육, 성인기초교육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2. (생략)

3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

--- 성인 문자해득교육-----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3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 ① -----

---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-----라 한다-----
----- 평생학습도시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
----- 구민--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평생교육협
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
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
을 협의·조정하고 구청장의 자
문 역할을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5조(구성 및 위원) ① 협의회는
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
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
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된
다.

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
회무를 총괄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
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
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서울특별시 서
부교육지원청 학무국장

----- 마포구 평생교육협
의회-----

② ----- 각 호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
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
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
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의장은 구청장-----
부의장-----
--.

③ 의장-----
협의회의 사무-----
-----.
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
의장이 부득이한 -----

-----.

⑤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협
의회의 ----- 사람이
된다.

1.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
평생교육 담당 국장

2. 위촉직 위원 : 평생교육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,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⑧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.

⑨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 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

나. 평생교육 전문가

다.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

라. 구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

⑥ -----

해당 -----.

⑦ ----- 하고
한 차례만 -----
----- 전임자 임기-----
-----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-----.

⑧ -----
----- 1명-----
-----.

⑨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제10조(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의장-----
--

<삭제>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9조(설치) ① -----

----- 서울특별

시 마포구 -----

----- . 다만, 근거리 학습

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

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

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

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기능) -----

-- 각호-----.

<p>1. ~ 7. (생략)</p> <p>제15조(자원봉사자)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내</u>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자원봉사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
--	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김해연 (☎ 3153-8972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는 2007.5.3. 제정하여 2009.11.12. 최종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정비하여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과 상이한 부분과 평생교육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-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 5조 및 제8조에서 평생교육협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으로
 - 「평생교육법」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의장 및 부의장으로 수정
 -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
 - 위원 임기 중 연임제한 없음을 한 차례만 연임
 - 위촉직 위원에 마포구의회의원이 포함되도록 명시

- 안 제9조에서는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단위 평생학습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

- 이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 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

[관계 법령]

평생교육법

[시행 2020. 6. 4] [법률 제16677호, 2019. 12. 3, 일부개정]

제14조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·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시·군·구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군·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·군·구협의회는 의장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·군·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 전문가,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,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<개정 2016. 5. 29.>

④ 시·군·구협의회는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5. 29.>

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- 1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2. 평생교육 상담
3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
5. 제21조의3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